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|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 | 규정번호 | 3-4-19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제정일자 | 2016. 3. 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개정일자 | 2026. 7. 1 |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삭제 <2020.3.1.>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취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와 이와 관련된 사업 및 교육, 상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3.1., 2026.7.1.)

제3조(설치 및 운영)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입학취업처에 둔다. (신설 2026.7.1.)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0.3.1., 2026.7.1.)

1. 취업지원에 관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(개정 2026.7.1.)
2. 삭제 <2017.4.1.>
3. 삭제 <2017.4.1.>
4. 취업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(개정 2017.4.1., 2017.9.1., 2026.7.1.)
5. 취업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
6. 삭제 <2017.4.1.>
7. 진로·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(개정 2017.9.1.)
8. 취업통계조사 실시 및 관리
9. 기타 진로·취업 관련 제반 사항 (개정 2017.9.1.)

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 (신설 2026.7.1.)

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신설 2026.7.1.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) 본 대학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취업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통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 (개정 2020.3.1., 2021.3.1., 2023.9.1., 2026.7.1. )

② 위원회의 임기 및 역할 등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한다.

제7조(평가 및 환류) 취업지원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. (개정 2017.9.1., 2020.3.1., 2026.7.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목개정 적용례)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으로 제목을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「취업지원운영규정」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